

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3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3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4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3. 17) 상정

○ 제14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3. 17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심 명 식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7663호, 2005. 8. 4. 공포·2006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29조제2항 → 제34조 제3항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
(안 제3조제1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없음	<input type="radio"/>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21호
의결 년월일	2008. 3. 20 (제142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3. 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7663호, 2005. 8. 4. 공포·2006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29조제2항 → 제34조제3항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3조제1항)

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문화예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”을 “문화예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2001년도”를 “2001년”으로 하며, “연도별”을 “연도별로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단”을 “다만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”를 “기금운용 계획에 따라”로 하고, “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”를 “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6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하며, “범위내”를 “범위 안”으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개시전”을 “개시 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중 “대상사업등”을 “대상사업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사진등”을 “사진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예술업무담당주사”를 “문화예술업무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회계년도마다”를 “회계연도마다”로 하고, “출납폐쇄후 2월이내”를 “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세입세출외”를 “세입·세출 외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문화예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기타 잡수입</p> <p>③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999년까지 출연한 출연금 이외에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2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50억 원을 출연하고, 연 출연금은 연도별 균등하게 출연한다. 단, 연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(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)로 관리한다.</p> <p>②기금은 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.</p>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문화예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다음 각 호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그 밖의-----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2001년-----</p> <p>-----연</p> <p>도별로-----다만, --</p> <p>-----.</p> 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-----</p> <p>기금운용 계획에 따라-----</p> <p>-----제34조제</p> <p>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제6조에</p> <p>따라-----</p> <p>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(생략)</p> <p>④기금은 <u>당해년도</u>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,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 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심의)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<u>다음 각호</u>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</p> <p>제5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기금운용 계획은 매 회계년도 <u>개시 전</u>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<u>제1항의</u>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<u>다음 각호</u>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당해년도</u> 기금사용 계획</p> <p>3. 4. (생략)</p> <p>제6조(기금지급 대상사업등) ①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<u>다음 각호</u>와 같다.</p> <p>1. 문학,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, 어문, 국악, 건축, <u>사진등</u>의 문화예술활동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u>해당 연도</u>----- <u>범위 안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심의) ----- -----<u>다음 각 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-----</p> <p>제5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----- -----<u>개시 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제1항에</u> 따른----- -----<u>다음 각 호</u>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해당 연도</u>-----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기금지급 대상사업 등) ① ----- -----<u>다음 각 호</u>----- ----- 1. ----- ----- <u>사진 등</u>-----</p>

